

「정기실시 공연·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
산정방법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고시 재검토
기한 설정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고시 재검토 기한(3년) 조문을 추가함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정기 실시 공연·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·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공연·전시 실시횟수)** ①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- ②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. 다만, 해당 문화시설이 전시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- ④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.
- ⑤ 영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3조(기여도 산정방법)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"공연·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"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, 각색·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·번역을 창작으로 본다.

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"창작"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.

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"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"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
2. 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

제4조(비율 산정방법)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"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공연·전시 등의 제작,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2. 공연·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3. 공연·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

30 이상 일 것

4. 공연·전시 등의 제작, 기획, 기술지원,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
제5조(실적제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장에게 공연·전시 등의 실시 실적과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실적통계공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장이 제출한 실적의 종합적인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.

제7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